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강민정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5773 발의연월일: 2020. 11. 26.

발 의 자: 강민정·양정숙·최강욱

민형배 · 김영배 · 강득구

이성만 · 용혜인 · 김경만

양경숙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지방대학의 장은 의과대학, 한의과대학, 치과대학, 약학대학 및 간호대학 등(이하 "의과대학 등"이라 함)의 입학자 중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의 수가 학생 모집 전체 인원의 일정 비율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, 시행령에서 그 비율을 지역에 따라 20% 또는 30%로 규정하고 있음. 이는 해당 지역에 정주하면서 지역발전에 공헌할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과 동시에, 의과대학 등에 대해서는 지역인재 선발에 더욱 강한 책임을 부과함으로써 지역 의료여건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임.

그런데 2021학년도 전국 의과대학 입학전형 현황에 따르면 전국 38 개 의과대학 중 7개 대학에서 모집비율을 준수하지 않았으며, 2020학년도 기준 의과대학 중 4개 학교에서는 지역인재전형을 통한 최종등록자의 10% 이상이 타 지역 출신 학생인 것으로 드러났음.

이에 법률의 목적과 의료인력 양성의 취지를 고려하여 의과대학 등에 대한 우수인재 선발 요건으로서 해당 지역에 일정기간 거주하면서해당 지역의 중·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 더욱 한정하고, 이 경우지방대학의 장은 해당 지역 내 시·군·구 간 균형 있는 선발을 위해노력하도록 함으로써 지역 의료인력 양성을 도모하려는 것임(안 제15조).

법률 제 호

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제2항 중 "해당 지역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(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)"을 "해당 지역에 일정기간 거주하면서 해당 지역의 중·고등학교를 모두 졸업한 사람(고등학교의 경우 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)"으로, "노력하여야 한다"를 "하여야 한다"로 하고, 같은 항에 후단을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4항 중 "비율"을 "비율, 거주기간, 거주요건"으로 한다.

이 경우 지방대학의 장은 해당 지역의 시·군·구 간 균형있는 선발을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지역의 우수인재 선발에 관한 적용례) 제1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2학년도에 중학교에 입학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5조(대학의 입학기회 확대) ①	제15조(대학의 입학기회 확대) ①
(생 략)	(현행과 같음)
② 지방대학의 장은 지역의 우	2
수인재를 선발하기 위하여 의	
과대학, 한의과대학, 치과대학,	
약학대학 및 간호대학 등의 입	
학자 중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	해당 지역에 일정기간
를 졸업한 사람(졸업예정자를	거주하면서 해당 지역의 중・고
<u>포함한다)</u> 의 수가 학생 모집	등학교를 모두 졸업한 사람(고
전체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이	등학교의 경우 졸업예정자를 포
되도록 <u>노력하여야 한다</u> . <후	<u> 함한다)</u>
<u>단 신설></u>	
	<u>하여야 한다</u> . <u>이 경우 지방대</u>
	학의 장은 해당 지역의 시・군
	·구 간 균형있는 선발을 하기
	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
④ 해당 지역의 범위, <u>비율</u> 및	④ <u>비율, 거</u>
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	주기간, 거주요건
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칙	
으로 정한다.	
	-,